

서울특별시의회
제333회 정례회

의안
번호

3366

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

검토보고서



2025.12. 5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

검토보고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3366호, **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**은 '25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관급자재, ICT 운영 및 사무가구 등 계약건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 중 일부를 통합관재센터 예비 운영 및 신축건물 베이크 아웃 등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부대비에 반영하고, 그 외 2026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치금을 편성하기 위하여 2025년도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25년도 말 조성액 변경 (총995,597천원 증가)
 - 2026년도 이전에 따른 소요 예산을 2025년도 예치금으로 편성(연도 말 조성액 증가)

(단위 : 천원)

구분	'24년도 말 조성액(a)	'25년도 기금운용계획 ¹⁾		'25년도 말 조성액 (d=a+b-c)
		수입계획(b)	지출계획(c)	
기정(A)	114,625,979	14,947,051	129,573,030	0
변경(B)	114,625,979	14,947,051	128,577,433	995,597
증감(C=B-A)	0	0	△995,597	995,597

1) 재무활동(예치금) 제외

나.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 지출계획 변경

(단위 : 천원, %)

정책	단위	세부	사업내역	변경(A)	기정(B)	증 감 (C=A-B)	증감율 (D=C/B)
			합 계	129,573,030	129,573,030	0	0
①			기관운영	128,577,433	129,573,030	△995,597	△0.77
			교育행정기관시설	128,577,433	129,573,030	△995,597	△0.77
			기관시설유지관리	128,577,433	129,573,030	△995,597	△0.77
			신청사 건립	128,577,433	129,573,030	△995,597	△0.77
			설 계 비	58,118	58,118	0	0
			시 설 비	113,065,560	113,665,560	△600,000	△0.53
			감 리 비	3,692,268	3,692,268	0	0
			시 설 부 대 비	1,150,000	820,723	329,277	40.12
			이 사 비	385,000	385,000	0	0
			미 술 작 품 설 치 비	677,000	677,000	0	0
			ICT 시스템 운영	953,861	1,105,000	△151,139	△13.68
			전 산 망 시 설 비	435,000	435,000	0	0
			ICT 시스템 HW	3,581,795	3,737,360	△155,565	△4.16
			ICT 시스템 SW	1,602,470	1,754,640	△152,170	△8.67
			사 무 레 이 아 웃	2,700,000	2,966,000	△266,000	△8.97
			급 식 기 구	276,361	276,361	0	0
②			재무활동	995,597	0	995,597	100
			예치금	995,597	0	995,597	100
			예치금	995,597	0	995,597	100

III. 검토의견 ¹⁾

-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도부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
-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 및 지출계획 총액에 변동없이 당초 지출계획한 정책사업중 개별 사업내역에 대한 증·감을 통해 지출계획 규모를 변경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
 -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인 **기관운영**은 당초 지출계획한 사업내역중 낙찰차액이 발생되어 **시설비**(△6억원)를 포함한 일부 사업내역은 감액하고, 시설부 대비는 증액(3억 2,900만원)하려는 것이나, 당초 지출계획보다 △9억 9,500만원, △0.77%를 감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이 불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 - 그러나 정책사업을 신설하여 지출계획하려는 **재무활동**의 경우에는 다른 정책사업인 **기관운영**에서 감액한 9억 9,500만원을 순증하여 예치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²⁾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는 사안에 해당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
- 아울러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안 제출에 앞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³⁾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, 심의하여⁴⁾

1) 검토보고서의 경우,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

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① (생략)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3) 「지방기금법」 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

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의회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,

- 동 기금의 설치 · 운용 근거인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· 운용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⁵⁾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사업비 집행잔액을 예치하고자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- 다만, 동 기금의 경우, 청사건립을 위한 적립성 기금임에도 그동안 예치금을 지출계획 하지 않은 바, 동 기금을 사실상 사업관리기금처럼 운용함으로써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되는 잉여금을 여유재원(예치금)으로 지출계획에 계상하지 않고, 개별 사업내역에서 발생된 사실상의 집행잔액을 다음연도 수입계획중 전년도이월금으로 편의를 선택한 것은
 -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을 벗어난 운용사례는 아니라 할지라도 집행잔액을 적립하는 기금의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한 결과 일 수밖에 없고,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심사하는 의회로서는 실제 여유재원의 규모와 수입계획의 적정규모를 파악하는데 혼선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향후 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
3. 기금의 관리 ·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4) 서울특별시교육청, 청사이전추진단-5920 ('25. 9.30), “2025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안내”

5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· 운용 조례」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.

1.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

2. 설계비 및 감리비

3.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